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4.10.10현재, 세전)

구분	내용
상품특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재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기업인정상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은행별 1인1계좌)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3년 또는 5년
가입금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기업인정상공단에서 승인한 금액)
기본금리	연 3.00%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2.00%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① 급여 이체 실적 1.40% ② 카드 결제 실적 0.50% ③ 마케팅등의 0.10%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 0, 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중도해지금리	<table><thead><tr><th>기간</th><th>중도해지금리</th></tr></thead><tbody><tr><td>1개월 미만</td><td>연 0.10%</td></tr><tr><td>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td><td>연 0.15%</td></tr><tr><td>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td><td>연 0.20%</td></tr><tr><td>6개월 이상</td><td>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1) x 경과율^(주2) (단, 연 0.20% 미만시 연0.20% 적용)</td></tr></tbody></table>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시 연0.20% 적용)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table><thead><tr><th>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th><th>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th><th>11개월 이상 경과시</th></tr></thead><tbody><tr><td>60% 적용</td><td>70% 적용</td><td>90% 적용</td></tr></tbody></table>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중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 상품특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중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4.10.10 현재, 세전)

구분	내용		
가입대상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은행별 1인1계좌)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하나원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계약기간	3년 또는 5년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금액)		
적립방법	• 월1회 납입 가능 •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만 적립 가능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기업지원금	• 기업지원금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적용하는 공제금으로 만기해지시 지급 • 단, 중도해지시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기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기업지원금은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공제금 수령계좌로 입금 ※ 기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본금리	연 3.00%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2.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내용	
	급여 이체 (연 1.4%)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주1) 실적율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카드 결제 (연 0.5%)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마케팅 동의 (연 0.1%)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입금 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여차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2) x 경과율 ^(주3) (단, 연 0.20% 미만 시 0.2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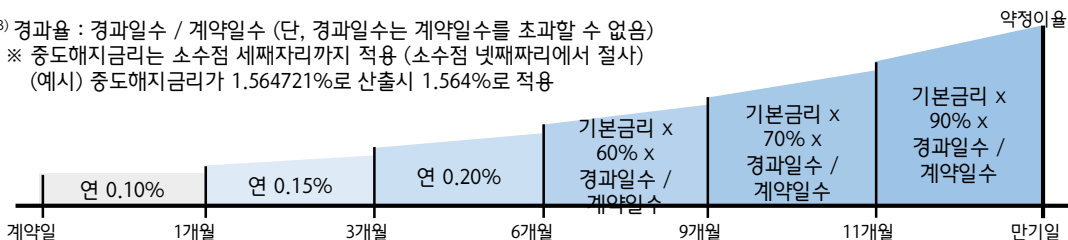
(주2)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3)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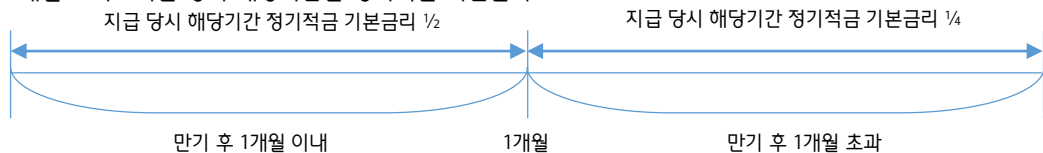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중도해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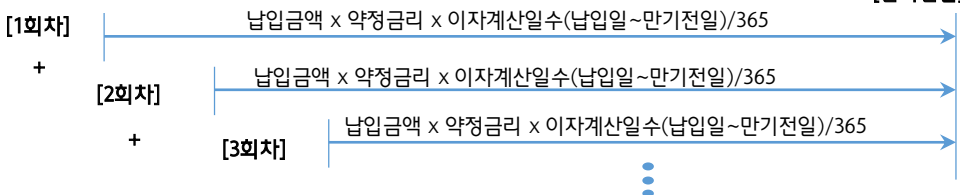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만기전일]



수수료우대 서비스


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

항 목	우대내용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 기기)	월 10회 면제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환율 우대 서비스

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환율 우대 서비스 제공

항 목	우대내용
당발 송금 및 환전시 환율(spread)우대	우대내용
영업점에서 USD 환전시(외화지폐)	90%우대
영업점에서 JPY/EUR 환전시(외화지폐)	80%우대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USD/JPY/EUR 당발 송금시	50%우대

만기앞당김 지급	불가
일부해지	불가
담보제공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 가능)
양도 및 명의변경	불가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해당</p>  </div> <div>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p> </div> </div>

3

유의사항

- 기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업지원금은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